

신주발행공고

미래산업 주식회사는 상법 제 416 조에 의거 2019 년 09 월 11 일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 합니다.

*2019 년 10 월 21 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일정 변경을 결의 하였음.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08,400,000
	기타주식 (주)	-
2. 1 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34,818,4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6,181,000,000
	운영자금 (원)	13,828,6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우선공모증자

6. 신 주 발 행 가 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원)	-		
		기타주식(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원)	144	확정예정일	2019 년 12 월 05 일
		기타주식(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9 년 11 월 13 일		
9. 1 주 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6296071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9 년 12 월 09 일
		종료일	2019 년 12 월 09 일
	구주주	시작일	2019 년 12 월 09 일
		종료일	2019 년 12 월 10 일
	일반공모	시작일	2019 년 12 월 12 일
		종료일	2019 년 12 월 13 일
12. 납입일			2019 년 12 월 17 일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 년 01 월 01 일
14. 신주권교부예정일			-
15.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 년 12 월 27 일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 년 09 월 11 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1) 상기 예정발행가액은 본 유상증자를 결정한 최초 이사회결의일(2019 년 09 월 11 일) 기준입니다.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 근거

1) 신주의 발행가액: 본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6 조 및 제 5-18 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

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2) 예정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6 조 및 제 5-18 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 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모집(예정)가액은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를 기준주가 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모집(예정)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 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예정발행가액을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때 공시되는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3) 확정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 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 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 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주식의 20.0%인 41,680,000 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9 년 11 월 13 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 주당 0.26296071 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 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 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 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구 분	상세 내역
A. 보통주식	634,818,400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A+B)	634,818,400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807,339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634,011,061
F. 유상증자 주식수	208,400,000
G. 증자비율 (F/C)	0.32828286
H. 우리사주조합 배정	41,680,000
I. 구주주배정 (F-H)	166,720,000
J. 구주주 1 주당 배정비율 (I/E)	0.26296071

③ 일반공모 청약:

가)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 9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

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 사 6 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본 · 지점	2019 년 12 월 09 일
구주주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본 · 지점	2019 년 12 월 09 일~ 2019 년 12 월 10 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주식을 예약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 · 지점 2)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본 · 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본 · 지점, 홈페이지 · HTS	2019 년 12 월 12 일~ 2019 년 12 월 13 일

라. 기타 참고사항

- 1) 신주배정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9 년 11 월 14 일로부터 2019 년 11 월 20 일까지로 합니다.
-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 될 수있습니다.
-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 354 조 및 당사 정관 제 13 조에 의거하여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 2019 년 11 월 13 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9 년 11 월 14 일 ~ 2019 년 11 월 20 일

2019 년 10 월 21 일

미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곤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